「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골목상권지원단장 김 팔 근

2. 제안이유

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삼일문고’와 극단 ‘공터다’ 주변에 ‘청년예술 창업특구’를 조성하여 구도심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집적으로 문화·예술과 시장 경제가 결합한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8조

다. 필요성 :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인구 유출 심화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요자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 필요

라. 위탁 사무 내용 : 금오시장 도시재생 구역 내 예비 창업 청년 대상 예술분야 창업 지원(교육, 컨설팅, 창업 지원금 등)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바. 소요예산 : 600백만원(200백만원/년)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구미시 인구청년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6.9.22.)

아. 위탁구분 : 재계약(수탁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부서의견

○ 실효성 있는 예술분야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년기본법」 제18조

(2)「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3)「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8조

(4)「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안건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금오시장 일원의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을 위한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창업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비 창업 청년을 위한 예술 분야 창업 지원과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그간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분야(공간대여 등)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업 아이템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한편, 초기 지원(창업지원비, 임차료 등) 종료 후에도 청년 창업가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창업지원 사업을 예술, 청년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